

비점오염원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①상 호 (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②성명(대표자)											
	③주 소		(전화 :)									
④사업장소재지			(전화 :)									
신고내용	공통	⑤사업명 또는 업종			(분류번호)							
		⑥영향하천·호소 및 해양명			⑦사업승인(허가 등) 기관							
	개발사업	⑧공사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⑨사업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⑩총 사업면적			m ²			⑪개발면적			m ²	
		⑫토지이용 형태별 면적	공사 중		m ²		⑬주요 관리 대상 비점오 염물질	공사 중				
			공사 후		m ²			공사 후				
	사업장	⑭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⑮부지 총면적			m ²		
		⑯강우노출 면적			m ²			⑰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공통	⑱방지시설 형식			⑲규모 또는 용량				⑳예상처리효율(%)			
	「수질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1. 개발사업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 작성 요령 및 기준

1. 신고내용란 중 개발사업란은 「수질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사업장란은 동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2. ⑫란은 공사 중, 공사 후의 토지이용 형태별 면적을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3. ⑬란은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사 중, 공사 후에 관리가 필요한 주요 비점오염물질을 모두 기록합니다.
4. ⑯란은 강우에 노출되어 비점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공정, 야적시설 등의 면적을 기록합니다.
5. ⑰란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주요 비점오염물질을 모두 기록합니다.
6. ⑱⑲⑳란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중, 공사 후의 강우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구분하여 모두 기록하고,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 설치하는 비점오염 방지시설을 모두 기록하며, 방지시설의 종류가 칸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칸수를 늘려 작성하거나 별지로 작성합니다.
7. ㉑란은 자연형 시설의 경우 초기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5mm를 기준으로, 장치형 시설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표본 추출된 강우자료가 전체 강우사상의 확률빈도 80%에 해당하는 강우강도일 때를 기준으로 설계한 값을 기재하되, 처리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방지시설 이외의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 또는 용량을 축소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8. 구비서류 중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방지시설의 예상처리효율, 산정근거 및 기준 강우강도 등 설계인자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